

제35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 1소위원회 공청회 자료

1. 감리회본부 구조 개편

- 1) 개정 내용 : 감리회본부 구조를 4국 1실에서 4국 체제로 개편하기로 하다.
 - 선교국, 교육국, 사회평신도국, 사무국(사무국 + 행정기획실)
 - 사무국 산하에 비서실(부장 대우)을 둔다.
 - ※ 2022년 연수원 폐지, 2024년 행정기획실 폐지
- 2) 개정 취지 : 2021년 연수원 폐지에 이어 2023년 행정기획실 폐지로 본부 구조를 효율화함
- 3) 관련 조항 : 제3편 조직과 행정법 【343】 제143조(본부의 부서)

2. 연회재편

- 1) 개정 내용 : 연회재편의 세부사항에 대한 여론수렴 및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여 2025년 입법의회에서 세부사항(명칭, 경계조정 등)은 논의를하기로 하다.

※ 국내 11개 연회를 6개 연회로 아래와 같이 개정하려 했으나 1) 이 개정안은 재편이 아니라 통합이고, 2) 재편을 위한 장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3)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등으로 5차 회의에서 부결됨.

- | | |
|------------------------|---------------------------|
| 1. 서울연회 : 서울연회 + 서울남연회 | 2. 중부연회 : 중부연회(현행과 같음) |
| 3. 경기연회 : 경기연회 + 중앙연회 | 4. 동부연회 : 동부연회 + 충북연회 |
| 5. 남부연회 : 남부연회 + 충청연회 | 6. 삼남특별연회 : 삼남연회 + 호남특별연회 |

- 2) 관련 조항 : 제4편 의회법 【587】 제87조(연회)

현행	개정안
<p>【587】 제87조(연회)</p> <p>② 제1항에 규정된 연회를 5~6개 연회로 재편한다. 다만, 연회 명칭, 경계 조정 등 세부사항은 2023년 입법의회에서 결정하되 2026년 총회부터 시행한다.</p>	<p>【587】 제87조(연회)</p> <p>② 제1항에 규정된 연회를 5~6개 연회로 재편한다. 다만, 연회 명칭, 경계 조정 등 세부사항은 2025년 입법의회에서 결정하되 2026년 총회부터 시행한다. <개정></p>

3. 미주자치연회 관련 내용

- 1) 개정 취지 : 미주자치법을 자체적으로 제정, 개정하여 미주자치연회가 독립된 연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미주자치연회의 경계 또한 미주자치법을 따르도록 한다.
- 2) 관련 조항 : 제3편 조직과 행정법 【333】 제133조(미주자치연회 조직의 목적)
 【334】 제134조(미주자치연회의 자치권)
 제4편 의회법 【586】 제86조(미주자치연회 직무)
 제9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1733】 제11조(미주자치연회 경계)

현행	개정안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 8 장 미주자치연회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 8 장 미주자치연회
<p>【333】 제133조(미주자치연회 조직의 목적) 미주자치연회는 미주지역 안에 있는 한국 감리교회들로 구성하며 <u>교회재산 관리와</u> 종교법인으로서의 <u>의무와 권리를 보유함에 있어서</u> 미국 현지법에 따라 연회를 조직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서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를 조직한다.</p>	<p>【333】 제133조(미주자치연회 조직의 목적) 미주자치연회는 미주지역(<u>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남미</u>) 안에 <u>흩어져</u> 있는 한인 및 원주민 감리교회들로 구성하며 종교법인으로서의 <u>지위를 보장받고, 안전한 교회 재산관리를 위하여 소속 국가의</u> 현지법에 따라 연회를 조직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서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를 조직한다. <개정></p>
<p>【334】 제134조(미주자치연회의 자치권) 미주자치연회는 그 지역적, 문화적, 실정법적 차이를 인정하여 자치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미주자치연회는 교리와 <u>헌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치법을 제정·개정·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감독회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장정개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입법의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독회장이 미주자치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거나 감리회 교리와 장정과 상충되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미주자치연회에 자치법 개정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주자치연회는 3개월 이내에 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미주자치연회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장정개정위원회가 직접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법의회에서 이를 의결하고 시행한다.</u></p>	<p>【334】 제134조(미주자치연회의 자치권) 미주자치연회는 그 지역적, 문화적, 실정법적 차이를 인정하여 자치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미주자치연회는 교리와 <u>역사만을 공유하고 미주자치연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자치법(이하 미주자치법)에 따라 독립된 자치연회로 운영한다.</u> <개정></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4편 의회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제 7 장 미주자치연회</p> <p>【586】 제86조(미주자치연회 직무) 미주자치연회의 직무는 미주자치연회 자치법에 준하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p> <p>② 미주자치연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와 은급재단 이사 이외의 총회 및 본부의 이어나 위원을 파송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편 의회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제 7 장 미주자치연회</p> <p>【586】 제86조(미주자치연회 직무) 미주자치연회의 직무는 미주자치연회 자치법에 준하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p> <p>② 미주자치연회는 <u>미주자치법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므로 총회 및 본부에 대한 교리와 장정이 정하고 있는 연회의 권리 중 ‘총회대표권, 총회실행부위원회와 은급재단 이사’ 이외의 ‘감독회장 선거권, 본부 각 기관의 위원 및 이사 파송권, 장정개정위원’은 제외하고 본부지원금, 본부 부담금, 은급 부담금 등은 유지한다. <개정></u></p> <p>③ <u>미주자치연회는 자치법에 의하여 독립된 자치연회로 운영하되 연회 간 교역자의 인사이동은 교리와 장정이 정하고 있는 국내의 연회 간 이명절차를 준용한다. <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9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p> <p>【1733】 제11조(미주자치연회 경계) 미주자치연회 경계는 미주자치연회의 자치법에 준한다. 다만, 미주자치법이 「교리와 장정」과 상충하여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속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감독회의의 협의를 거쳐 국내 각 연회 및 지방회에 편입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9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p> <p>【1733】 제11조(미주자치연회 경계) 미주자치연회 경계는 미주자치법에 준한다. <u><개정></u></p>
	<p style="text-align: center;"><u>경과조치 <신설></u></p> <p><u>이(미주자치연회와 관련된) 법의 시행은 2026년 총회부터 시행한다.</u></p>

제35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 3소위원회 공청회 자료

1. 선거일정 축소

- 1) 개정 취지 : 긴 선거 일정에 대한 후보자의 피로함과 선거권자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선거일정을 대폭 축소하다.
- 2) 관련 조항 :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2.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자 이중국적 허용

- 1) 개정 취지 : 제3편 조직과행정법 제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3항, 137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3항과 통일
- 2) 관련 조항 :

현행	개정안
【1613】 제13조(피선거권) ⑬ 대한민국 국적 외에 2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는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미주자치연회는 제외)	【1613】 제13조(피선거권) 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u>이어야 한다.</u> <u><개정></u>

3. 선거권자 자격 완화

- 1) 개정 내용 : 부담금 완납 여부만 확인하고 선거권을 부여한다.
- 2) 개정 취지 : 선거권 제한 요건 중 ‘재단편입 여부’를 삭제하여 1) 선거권리 확대, 2) 불공평한 상황 해소(예: 불가확인서 제출 시기로 인해 선거권 박탈), 3) 불필요한 고소·고발 방지를 위해 개정하고자 한다.
- 3) 관련 조항 :

현행	개정안
【1614】 제14조(선거권) ② 전년도 12월까지 각종 부담금을 완납한 교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유지재단편입이 불가하여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당해 지방회 전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614】 제14조(선거권) ② 전년도 12월까지 각종 부담금을 완납한 사람으로 한다. <u><개정></u>

4.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기준

- 1) 개정 취지 : 지난 선거에서 논란이 되었던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기준을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한다.
- 2) 관련 조항 :

현행	개정안
【1614】 제14조(선거권) ⑤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명된 연수 순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회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15%까지는 여성으로 선출한다.	【1614】 제14조(선거권) ⑤ <u>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다음 순서에 따라 선출한다. <개정></u> 1. 연회 회원 2. 연회 회원 외 장로로 임명된 연수순, 연장자순 3. 연회 회원 외 권사로 임명된 연도순, 연장자순 4. 연회 회원 외 집사로 임명된 연도순, 연장자순

제35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 4소위원회 공청회 자료

1. 웨슬리신학대학원 운영을 위한 임시조치법

1) 개정 취지 : 3개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정원미달과 질적 저하를 막고, 감리교회가 요구하는 영성과 지성을 갖춘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통합된 웨슬리신학대학원의 운영에 대한 법률을 만들고자 함이다.

2) 관련 조항 :

현행	개정안
3) 3개 신학대학교 신학(목회신학)대학원 통합 및 설립을 위한 임시조치법	3) 웨슬리신학대학원 운영을 위한 임시조치법 <개정>
<p>【2098】 제1조(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교역자 수급 관련 신학(목회신학)대학원 통합 및 설립) 이 법의 목적은 감리회 미래를 위하여 교역자 수급을 조절하고,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의 화합과 일치를 위하여 감리회가 더욱 결속하며, 사명감을 갖는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거나 별도로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을 설립하고자 함이다.</p> <p>①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거나 별도로 신학대학교(가칭 “웨슬리신학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웨슬리신학대학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2021년 12월 31일 안에 구성하여 활동하게 한다.</p> <p>② 이 법은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의 통</p>	<p>【2098】 제1조(목적) 이 법의 목적은 감리회 미래를 위하여 교역자 수급을 조절하고,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의 화합과 일치를 위하여 감리회가 더욱 결속하며, 사명감을 갖는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이다. <개정></p> <p>【2099】 제2조(명칭) 통합신학대학원은 웨슬리신학대학원으로 한다. <신설></p> <p>【2100】 제3조(운영위원회 조직) 운영위원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구성한다. <신설></p> <p>【2101】 제4조(운영위원회 직무) <신설></p> <p style="margin-left: 20px;">① 웨슬리신학대학원 입학정원을 조정한다.</p> <p style="margin-left: 20px;">② 웨슬리신학대학원의 통합커리큘럼을 정한다.</p> <p style="margin-left: 20px;">③ 웨슬리신학대학원은 운영위원회의 학생선발기준과 교수들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한다.</p> <p>【2102】 제5조(소제지) 웨슬리신학대학원은 소제지 결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p>

현행	개정안
<p>합 또는 설립 운영이 될 때까지 유효하며, 2024년 2월까지 통합 또는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모든 제반 사항(준비, 예산확보 및 지원, 용역 및 시행 등)은 감리회 총회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은 이를 위한 모든 방안을 제시하고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감리회는 통합 및 설립 운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칭 “웨슬리신학대학원 설립 추진위원회”의 운영과 지원을 한다.</p> <p>④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간에 2022년 2월 말까지 통합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웨슬리신학대학원 신설을 감리회가 직접 추진하되, 이를 위하여 감리회 본부 내에 2022년 3월 말까지 실무준비단을 설치하고 운영한다.</p> <p>⑤ 웨슬리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한하여 준회원 허입 및 목사 안수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을 이미 졸업하였거나 웨슬리신학대학원 최초 졸업생이 배출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준회원 허입 및 목사안수 자격을 부여한다.</p>	<p><u>‘웨슬리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신설></u></p> <p>【2103】 제6조(시행) 2024년 2월까지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을 통합하고, 2025년 3월부터 웨슬리신학대학원을 운영한다. <u><개정></u></p> <p>【2104】 제7조(경과조치) 웨슬리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한하여 준회원 허입 및 목사 안수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2025년 웨슬리신학대학원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2024년 입학생까지는 이전 법을 따른다. <개정></p>
	<p><u>보칙 <신설></u></p> <p>【2105】 제8조(운영위원회 규정) 웨슬리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 규정은 총회 실행부 위원회에서 정한다.</p>